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동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07

발의연월일: 2021. 1. 11.

발 의 자:이동주·박홍근·서동용

고영인 · 맹성규 · 윤관석

진성준 · 김성환 · 송갑석

윤영덕 • 이규민 • 김경만

유정주・양정숙・양양영

우상호 · 이용빈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(이하 "공단등"이라 함)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 여 긴급경영안정자금,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.

그러나 공단등은 이의 대응 지원 업무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는 있으나,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·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 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 하여 정부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단등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,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경우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인력의 충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으로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	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
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	제29조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
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업무
	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
	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
	담당 인력의 충원 등이 이루어
	지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